

## 국무조정실 · 국무총리비서실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고(언론 홍보 및 취재지원)

국무조정실·국무총리비서실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.

2022년 12월 29일  
국무조정실장

### 1.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(1개 직위, 총 1명)

채용분야	인원	직급	채용기간	근무예정부서
언론 홍보 및 취재지원	1명	행정주사 (일반임기제)	임용일 (23.2월중)로 부터 1년간	공보실 소통총괄비서관실 (서울특별시)

※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, 관련 법령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

### 2. 주요 직무내용

- 해외순방 전담, 기자단 간담회 등 대·내외 행보 취재지원 총괄
- 기자단 지원·관리 등 긴밀한 대외협력을 통한 언론계 네트워크 강화
- 언론주요이슈 및 최신 홍보트렌드를 반영한 정책 지원 등 언론지원 품질 향상

### 3. 근거법령

- 국가공무원법(법률 제18308호)
- 공무원임용령(대통령령 제32627호)
- 공무원임용시험령(대통령령 제32998호)
- 공무원임용규칙(인사혁신처예규 제127호)
-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(인사혁신처예규 제130호)

## 4. 응시자격 요건 (기준 : 최종시험(면접) 예정일)

### ① 공통요건

-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,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

#### 【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】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#### 【「국가공무원법」 부칙 제2조(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)】

제33조제6호의3·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·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.

#### 【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51조(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)】

-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  1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  2.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료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  3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
  4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  5. 병역, 가점,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  6.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  7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- 응시연령 : 20세 이상(2003. 12. 31. 이전 출생한 자)
-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또는 최종시험(면접)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
-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(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자)

② 응시자격요건 **[별지 1호] 직무기술서(응시자격요건) 참조**

구분	내용
필수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,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</li> <li>○ 대한민국 국적소지자</li> <li>○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</li> </ul>
경력요건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(민간경력)</li> <li>2.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(공무원경력)</li> <li>3.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(민간경력)</li> </ol>
학위요건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</li> <li>2.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3.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/ol>

< 용어 정의 >

- 관련분야 경력 : 언론사, 민간기업, 공공분야의 언론 및 정책홍보 등 관련 업무
- 관련분야 학위 : 신문방송, 언론정보, 방송영상, 광고, 홍보, 커뮤니케이션, 정치·외교 등 이와 유사한 학과

○ 기본사항

- **필수요건을 충족**하고, 경력 또는 학위요건 중 **1개 이상에 해당**하면 응시 가능하며,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**경력·학위요건 중 하나만 선택**해 작성해야 함
- **응시자격요건**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, 학위 등은 **최종 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**으로 판단함
- '**경력**'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, **최종 관련경력을 기준**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**퇴직 후 3년**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('학위'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)

○ 경 력

- '경력'은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, **경력 증명서 제출 건에 한해 인정**
  - \* 경력증명서상에 **근무기간(연월일)·상근여부(주당 근무시간)·담당업무가 명시되어** 있어야 하며, 해당 내용이 누락되는 등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경력 불인정
-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,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
  - \*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

○ 학 위

- '관련분야 학위'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

③ 우대요건 **[원서접수 마감일 기준]**

우대요건
1.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 (응시자격요건에 필요한 경력 제외 / 연차별 차등 우대)
2. 정부·공공기관, 민간기관 등으로부터 수여받은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·상훈·수상실적 (기관장급 이상 상훈, 개인 성명이 기재된 상훈일 경우에만 인정 (단체 제외) / 건수별 차등 우대)

○ 기본사항

-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

○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경력

- 응시자격요건으로 지정된 관련 경력을 충족한 이후 초과한 관련 경력만 우대요건으로 인정(공무원경력, 민간경력 통산)

## 5. 보수수준

-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
  - 규정상 연봉한계액의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,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업무능력·자격·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
- ※ 연봉한계액(일반임기제 6호) : 37,152~73,739천원  
(기타 수당 별도,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개정에 따라 변동 가능)

## 6. 시험방법

### ① 1차시험 : 서류전형

-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공고된 채용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
  -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인 때에는 아래 서류심사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5배수로 결정 가능
- ※ 서류심사 기준 : 자기소개서·직무수행계획서, 관련분야 근무경력, 표창·상훈·수상실적 등

### ② 2차시험 : 면접시험

※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·중·하로 평가
- ※ (평정요소)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·품행·성실성 ⑤ 창의력·의지력·발전가능성
-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
- ※ (최종합격자 결정)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"하"로 평정 하였거나,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"하"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, "상"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, "상"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"중"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

## 7. 시험일정

구 분	일 정	비 고
모집공고	'22.12.29.(목)~'23.1.9.(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인사혁신처 나라일터, 국무조정실·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</li> </ul>
원서접수	'23.1.4.(수)~'23.1.9.(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무조정실 인사과 채용담당자(우편)</li> </ul>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'23.1.19.(목) 예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무조정실·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게시</li> </ul>
면접심사	'23.1.26.(목) 예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면접시간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상세 공고</li> </ul>
최종합격자 발표	'23.2.6.(월) 예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무조정실·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게시</li> </ul>

※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, 우리실 사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, 일정 변경 및 합격자 발표 등은 기관 홈페이지(<http://www.opm.go.kr>)의 알림마당-공지사항에 게시

## 8. 응시원서 접수

- 접수기간 : '22.12.29(목) ~ '23.1.9.(월), 09:00 ~ 18:00
  - ※ 접수번호(응시번호)는 원서접수 마감 이후 메일로 개별 통보 예정
- 접수방법 :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
  - ※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**09:00~18:00(12:00~13:00 제외)** 내에만 가능하나, **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등을 고려하여 방문접수 지양**
  - ※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에 한하며, 봉투 겉면에 "응시분야 및 직급" 기재
  - ※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
- 접수처 : 국무조정실 인사과
  - (주 소)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정부세종청사 1동 313호  
국무조정실 총무기획관실 인사과 채용담당자
  - (우편번호) 30107
- 응시표 :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당일 배부

## 9. 제출서류 (※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)

### < 공통사항 : 필수 제출 >

- ① 응시원서 1부 <별지 2호 서식>
- ※ 정부수입인지(행정주사(일반임기제) : 7,000원) 첨부,
  - ※ 응시수수료 면제 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자는 수입인지 첨부 대신 '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' 또는 '차상위계층 확인서', '한부모가족 증명서'를 첨부
- ② 이력서 1부 <별지 3호 서식>
- ※ 실무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하되, 기재된 경력사항은 증빙서류 첨부 시에만 인정됨을 유의
- ③ 자기소개서 1부 <별지 4호 서식>
- ※ A4 2매 내외로 작성(형식·구성은 자유)
-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<별지 5호 서식>
- ※ A4 5매 내외, '요약서'는 A4 1매로 작성
-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<별지 6호 서식>
- ⑥ 개인정보제공(이용) 동의서 <별지 7호 서식>

### < 개별사항 : 해당자만 제출 >

- ①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1부 <별지 8호 서식>
- ※ **재직기간(연월일), 직위, 담당업무, 근무형태(주당 근무시간)** 등 반드시 기재
    - 비상근 근무시 **주당 근무시간을 반드시 기재** (예: 주당 30시간)
    - **담당업무 미기재시 관련분야로 인정되지 아니할 수 있음**
  - ※ **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**(하단에 별도 기재 가능)
  - ※ 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(예-근로계약서, 인사기록카드, 업무분장내역 등)로 보완하여야 하며, 검증을 위해 '폐업사실증명서', '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', '소득금액 증명서'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

## ② 전문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

- ※ 학위·연구논문은 A4 1매 이내의 별도 논문요약서 첨부 <별지 9호 서식>
- ※ 논문의 표지·목차, 서론 사본 각 1부(논문명, 지도교수명, 학위자명 등 명시)
- ※ 심사위원 제척·기피, 응시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, 심사위원에게 학교명 등은 공개되지 않음

## ③ 주민등록 초본 1부

(남자만 병역사항 기재된 것으로 제출, 외국인 제출 불필요)

## 10. 유의사항

-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(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·학위·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)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,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-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### ◁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▷

인사혁신처 홈페이지([www.mpm.go.kr](http://www.mpm.go.kr)) - 참여민원 - 신고센터 - 인사신문고 -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

- 제출서류 미비, 기재 착오 또는 누락, 연락 불가능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.
-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, 응시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(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희망할 경우 반환청구서(별지서식 10호)를 작성하여 이메일 ([opminsa@korea.kr](mailto:opminsa@korea.kr))로 제출하시면 본인임을 확인한 후 사본을 남기고 원본서류를 반환해 드립니다.
- ※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: '23.2.7.(화)~'23.2.9.(목)

- 응시인원이 없거나 채용 예정인원과 동일한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.
- 해당업무를 수행할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서류심사 합격자의 경우 4대 보험(고용보험·국민연금·건강보험·산재보험) 중 1개 보험의 자격 득실 내역, 소득금액 증명원 등을 통해 경력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, 공무원채용신체검사, 제출서류 진위확인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본 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 매체에 변경공고 할 예정입니다.
-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동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,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,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.
- 기타 문의 사항은 국무조정실 인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 
(※ 채용 담당자 : 044-200-2801)